

부속서 2나

관세 철폐

1. 이 부속서의 당사국 양허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, 다음의 단계별 양허유형이 제2.3조제1항에 따른 각 당사국의 관세 철폐에 적용된다.

가. 당사국 양허표상 단계별 양허유형 “EIF”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완전히 철폐되며, 이 협정 발효일에 그 상품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.

나. 당사국 양허표상 단계별 양허유형 “3”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3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, 이행 3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.

다. 당사국 양허표상 단계별 양허유형 “4”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4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, 이행 4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.

라. 당사국 양허표상 단계별 양허유형 “5”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,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.

마. 당사국 양허표상 단계별 양허유형 “7”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7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, 이행 7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.

바. 당사국 양허표상 단계별 양허유형 “8”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8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, 이행 8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.

사. 당사국 양허표상 단계별 양허유형 “10”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

년 균등하게 철폐되어,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.

- 아. 당사국 양허표상 단계별 양허유형 “12”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2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, 이행 12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.
- 자. 당사국 양허표상 단계별 양허유형 “15”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, 이행 15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.
- 차. 당사국 양허표상 단계별 양허유형 “16”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6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, 이행 16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.
- 카. 당사국 양허표상 단계별 양허유형 “5-A”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행 1년차부터 이행 4년차까지 기준세율에서 유지되고, 이행 5년차 1월 1일에 완전히 철폐된다.
- 타. 당사국 양허표상 단계별 양허유형 “17-A”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행 1년차부터 이행 8년차까지 기준세율에서 유지된다. 이행 9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관세는 9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, 이행 17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.
- 파. 당사국 양허표상 단계별 양허유형 “17-B”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행 1년차부터 이행 10년차까지 기준세율에서 유지된다. 이행 11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관세는 7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, 이행 17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.
- 하. 단계별 양허유형 “S-A”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다음 규정을 따른다.
 - 1)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

한 관세는 기준세율에서 유지된다. 그리고

- 2) 1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감축되고,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.

거. 단계별 양허유형 "S-B"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다음 규정을 따른다.

- 1) 1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기준세율에서 유지된다. 그리고
- 2)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감축되고,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.

너. 단계별 양허유형 "E"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기준세율에서 유지된다. 그리고

더. 단계별 양허유형 "X"의 품목에 대해서는 이 협정상 관세에 관한 어떠한 의무도 적용되지 아니한다. 이 협정상의 어떠한 규정도 2005년 4월 13일자 세계무역기구 문서 WT/Let/492(양허표 LX-대한민국의 수정 및 정정의 인증본) 및 그 모든 개정에 규정되는 약속의 이행에 대한 대한민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2. 상품에 대한 각 관세 감축 단계에서의 과도적인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관세율 및 단계별 양허유형은 각 당사국 양허표에서 그 상품에 대해 표시된다.

3. 과도적인 양허 단계별 관세율은 최소한, 백분율의 가장 근접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되도록 그 아래는 버리거나, 또는 관세율이 통화단위로 표시되는 경우, 최소한, 페루에 대해서는 페루 공식 통화 단위의 0.001자리까지 되도록,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가장 근접한 원 단위로 표시되도록, 그 아래는 버린다.

4. 이 부속서 및 당사국 양허표의 목적상, 이행 1년차라 함은 제25.2조 (발효)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이 협정이 발효하는 연도를 말한다.

5. 이 부속서 및 당사국 양허표의 목적상, 이행 2년차를 시작으로 매년 관세인하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한다.